

소방법 항소 위원회(Fire Code Appeals Board) 심사 요청

2021년 10월 갱신

Seattle 소방법(Seattle Fire Code, SFC) 섹션 109.1에서는 소방법(Fire Code)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된 소방국의 결정 또는 조치에 대한 항소 절차를 제공합니다.

항소 제도는 Seattle 소방국 외부의 소방법 사안에 관해 정통한 사람들이 특정 소방법 준수 상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신청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최소 5명의 소방법 자문 위원회(Fire Code Advisory Board, FCAB)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인 항소 위원회가 항소를 심사합니다.

특정 소방법 준수 분쟁에 대해 1회의 심사만을- 항소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의 자문 권고가 있을 때까지 소방법 집행의 유예 여부는 소방서장(Fire Chief)의 단일 재량에 따릅니다. 비상 소방법 집행과 관련된 상황은 항소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의한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항소 위원회의 심사 요청 사전 단계

항소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신청자는 먼저 수정 규정 요건(SFC 섹션 104.8) 또는 대체 자료 및 방법(SFC 섹션 104.9)을 제안함으로써 준수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신청자는 또한 Seattle 소방국의 다음 담당자와 특정 준수 상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1. 소방국장실(Fire Marshal's Office, FMO)의 관련 조사관, Seattle 소방국 화재 예방부(Fire Prevention Division),

2. 해당 조사관이 해당 사안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소방국장실 조사관의 관리자,
3. 관리자가 해당 사안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소방서장,
4. 소방서장의 도움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필요한 경우 소방국장
5. 상기 담당자들과 논의한 후, 관련 문제, 사실관계 -및 관련 Seattle 소방법을 간결하게 명시한 항소 위원회 심사 요청서를 서면으로 소방서장 및 소방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및 권고

긴급성 등의 사유로 Seattle 소방국, 신청자, FCAB 위원장이 달리 기간을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아래 명시된 기한이 적용됩니다.

1. **서면 심사 요청서:** -신청자는 소방서장이 신청자의 규정 준수 분쟁에 대한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항소 위원회 심사 요청서를 서면으로 소방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FCAB에 심사 요청 통지: 소방국장을 대리하는 소방서장이 항소 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신청자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일(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FCAB 위원장에게 알리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때, 소방서장은 팩스 또는 기타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신청자의 서면 요청 사본을 FCAB 위원장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3. **심사의 범위:** 항소 위원회를 선정하기 전에, FCAB 위원장은 신청자의 요청이 항소 위원회가 고려할 수 있는 소방법 사안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결정합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FCAB 위원장은 신청자와 소방국장 모두와 상의합니다.

5. **향소 위원회 위원의 선정:** 향소 위원회 위원은 FCAB 위원장이 소방서장으로부터 신청자의 서면 검토 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선정됩니다. 향소 위원회는 Seattle 시법 (Seattle Municipal Code) 3.16.350에 따라 선정되며, 이 법률은 최소 5명의 FCAB 위원이 향소 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즈니스/산업 대표자 1명, 전문/기술 대표자 1명, 시민 대표 1명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전문성의 이유로 위원을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 또는 해당 신청자의 직원 또는 대리인은 해당 신청자의 규정 준수 분쟁을 검토하는 향소 위원회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Seattle 시법 4.16장에 포함된 Seattle 윤리 강령(Code of Ethics) 참조).
6. **당사자들과 향소 위원회의 접촉 제한:** 향소 위원회 회의 및 현장 방문 이외에, 신청자와 소방국 모두 -법 준수 분쟁에 관해 향소 위원회 구성원과 대화를 나누서는 안 됩니다. 단, 소방국장실 기술 법 개발 책임자(FMO Technical Code Development Director)를 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7. **회의 일정 계획:** 향소 위원회는 FCAB 위원장에 의해 선정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신청자의 규정 준수 분쟁을 심사하기 위해 모임을 가집니다. -기술 법 개발 책임자는 FCAB 위원장, 향소 위원회 구성원, Seattle 소방국, 신청자에 연락을 취해 향소 위원회 회의 장소 및 시간을 계획합니다.
8. **서면 진술서 및 증거:** 신청자와 Seattle 소방국은 각각 규정 준수 분쟁을 고려하기 위한 향소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일로부터 최소 7영업일 전에 관련 사안, 사실 및 관련 Seattle 소방법 조항에 대한 간결한 서면 진술서를 기술 법 개발 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진술서에는 전문가 증언 목록을 비롯하여 도면과 같은 관련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소방국은 각 향소 위원회 구성원을 위해 각자 자신의 진술서 및 첨부서류 사본 1부와

상대방을 위한 추가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 법 개발 책임자는 이러한 사본을 첫 번째 향소 위원회 회의로부터 최소 3영업일 전에 전달합니다.

8. **회의:** 향소 위원회는 자체 위원장을 선정합니다. 신청자가 먼저 발표하고, 이어 소방국에서 발표합니다. 향소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시작 시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않는 한 신청자와 소방국의 구두 발표는 30분으로 제한되며, 이에는 향소 위원회의 질의가 포함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각 당사자는 향소 위원회에 대한 동일한 발표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각 당사자의 구두 발표는 사실관계, 사안 및 관련 Seattle 소방법 조항에 대해 다루어야 합니다. 각 당사자는 향소 위원회를 상대로 한 발표에 설계 전문가 또는 다른 사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9. **현장 방문:** 향소 위원회는 소방국 또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향소 위원회의 자체 결정에 따라 규정 준수 분쟁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향소 위원회가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을 이용 가능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 일정 계획은 기술 법 개발 책임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현장 방문도 소방국 및 신청자 양측의 대리인의 참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 **향소 위원회의 권고:** 향소 위원회는 규정 준수 분쟁에 관한 최종 회의 또는 현장 방문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해당 규정 준수 상황에 관한 서면 권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자, FCAB 위원장 및 다른 FCAB 위원들에게도 향소 위원회 권고 사본이 제공됩니다. 향소 위원회의 심사 및 자문 권고는 소방서장이 신청자에게 향소 전 결정 사항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신청자와 소방국장 모두가 기한 연장에 합의한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향소 위원회의 권고는 오직 자문에 해당하고 Seattle 소방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소방서장이 향소 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서면으로 사유를 진술합니다. 이러한 진술서의 사본을 신청자, FCAB 위원, 시장실 및 시 의회 공공 안전 위원회의 의장직을 맡은 시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소방서장과 소방국장은 향소 위원회의 심사 결정 후에- 신청자와 직접 만나야 합니다.

추가 정보

향소 위원회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는 소방국장실의 기술 법 개발 책임자에게- (206) 386-1450번으로 직접 연락하십시오.

소방법 변경에 관한 일반적인 제안은 기술 법 개발 책임자를 통해 이용 가능한 서식을 이용해 서면으로 FCAB에 제출해야 합니다.